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가. 제정 이유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 9. 11.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1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향후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을 차단하여,
동 물품의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생산 업체의 피해를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